

허가 등 수수료(제60조 관련)

| 구 분 | 수 수 료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영업의 허가 및 신고 | 1만원(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). 다만, 영 제 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 |
| 2.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| 1만원(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) |
| 3.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| 5천원(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) |
| 4.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| 5천원(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) |